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최봉희 의원 발의】



2019.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87호로 2019년 11월 13일 최봉희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나.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5조)
-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안 제6조 및 제7조)
- 라.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안 제8조~제12조)
- 마.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
(안 제13조~제16조)
- 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교통안전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9. 11. 15. ~ 11.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건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교통안전법」에서 위임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안전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 안 제5조에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위촉 해제
- 안 제8조 ~ 제12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 ~ 제16조에서는 교통안전교육, 협력체계 구축, 교통지도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폐지를 규정함.

- 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이에 대한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법」에 따라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과 통합하는 등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정하는 안임.

- 검토 결과, 교통안전시행계획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조례는 위원회 명칭, 위원 수 등이 「교통안전법」과 맞지 않아 폐지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에 통합·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교통안전교육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관련 기관과의 교통협력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③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 또는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군·구교통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제18조(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소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과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시·도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② 시·군·구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이 영 제6조를 각각 준용한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치구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2. 교통행정과장
3. 도시계획과장
4. 가로경관과장

5. 도로과장

6. 영등포경찰서 교통과장

7. 구청장이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교통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교통행정과 교통개선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7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